

#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8-506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념 정의(안 2조)

-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교통카드, 손실요금

- 책무(안 3조) 및 지원대상(안 4조)

- 계획수립, 재원조달, 지급기준, 변동사항 통보 등

- 지원방법(안 5조) 및 손실요금 청구(안 6조)

- 교통카드, 시스템구축, 경비보조, 협약, 손실요금 청구 등

- 지원중단(안 7조) 및 사후관리(안 8조)

- 카드 사용 중지 및 환수 조치 등

제정 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3

사전예고(결과) : 의견 2건(반영1, 미반영1)

○ 입법예고기간 : 2020. 10. 13. ~ 11. 2.(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보고(붙임4)

- 방침결정문(붙임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붙임6)

##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이란 주민등록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5. “손실요금”이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에게 손실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손실요금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방재정법」

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손실요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대중교통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임 종 현
	담당·팀장 직위·성명	버스팀장 김 범식
	담당자 성명·전화	구본석 (행정 2964)

#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532
------------	-------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7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 수정이유

-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규정과 대상 범위를 확대 변경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무상교통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함.

## □ 주요골자

- 무상교통 지원대상에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신설.(안 제4조제2항)
- 안 제6조의 제목 “손실요금의 청구 등”을 “손실요금의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에 “시장은 무상교통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를 신설.(안 제6조제1항)

##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원안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손실요금의 청구 등)” 을 “(손실요금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원안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무상교통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생 략) <u>&lt;신 설&gt;</u>	제4조(지원대상) ① (원안과 같음) <u>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② <u>제1항의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 ----- ----- -----.
③ (생 략) 제6조( <u>손실요금의 청구 등</u> ) < <u>신 설&gt;</u>	④ (원안 제3항과 같음) 제6조( <u>손실요금의 지원 등</u> ) ① <u>시장은 무상교통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u>
① (생 략) ② <u>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② (원안 제1항과 같음) ③ <u>제2항-----</u> ----- ----- ----.
③ (생 략)	④ (원안 제3항과 같음)